

“n번방 ‘갓갓’, 구형대로 무기징역 내려야”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선고

“여성들을 노예삼고 군림한 대가 치러야 해”

檢,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

성착취물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위)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유승희 변호사는 “11일은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였던 문형욱의 1심 재판 선고일이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이제는 재판부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용기에 답변할 차례”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절대 잡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문형욱을 재판에 세울 수 있었던 건 피해자들의 용기”라며 “피해자들이 어렵고 지난한 수사과 재판참여를 통

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다시함계상담센터 소장은 “문형욱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사정과 협박을 번갈아 했고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해 자유자재로 부린 악질 성착취범”이라며 “여성들을 노예삼고 게임이라 농하며 군림했던 그간의 범행에 걸 맞는 철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이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하고 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 출발은 11일 있을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이다. 법원은 그가 감겨 초기 범행을 뉘우치게 부인했던 장면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문형욱은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



조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화방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는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오유나기자

술만 마시면 동네서 온갖 행패 60대 구속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네 상인·이웃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업무방해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우산동 일대에서 상인·이웃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만 취하면 다짜고짜 이웃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관련된 기존 112신고 내역 6건 등을 확인했으며, 지난 6월 또다시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벌여 추가 혐의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월까지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서민 경제 침해 사범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골목 주차차량 탈려던 20대, CCTV관제센터에 덜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이면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3분께 광주 서구 모 중학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심수 대의 문을 일일이 당겨보며 금품을 탈려고 시도,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계비를 벌고자 이 같은 일을 벌였으나,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한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다닌다. 차탈이 의심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격리 통보받고 나들이에 문중모임까지 간 60대 고발

자가 격리 통보 직후 방역 수칙을 어기고 나흘 간 지역 곳곳을 배회하다 최대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도록 유발한 60대 확진자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남구민인 60대 남성 A씨를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2100번째 확진자인 A씨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27일 오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가격리 통보 당일 오후엔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 소재 사찰을 방문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다음날인 지난달 28일께 광주 북구 문중 모임 사무실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달 2일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광주 서구 모 병원·약국을 잇따라 찾았다.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3일 결국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해 접촉한 5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4명(아들 2명·아내·장모)과 문중 모임 내 접촉자 친척 1명 등이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최대 5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 소재 사찰 내 간접적 접촉(비말 전파 등)의 가능성도 있다.

남구보건소는 “A씨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을 숨긴 채 외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고의로 어겼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알리야 하지만, 자진해서 병원·약국을 잇따라 찾아 추가 감염 위험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 남부경찰은 보건소측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륜차 사고 사망자 급증, 광주경찰 집중 단속 나선다

교통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고 비율 8.1%→27.4% 급증



광주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 및 음식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광주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 비율은 2019년 8.1%(49명 중 4명)에서 지난해 27.4%(62명 중 17명)로 급증했다. 산술적인 비율로 따지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사고에 따른 사

망자 17명 중 12명은 10~20대였다.

이륜차 사망 사고 원인 별로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58.8%(10명)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과의 추돌 또는 충돌 등에 의한 사고로 숨진 이륜차 운전자는 전체의 41.2%(7명)였다.

이에 광주경찰은 각 경찰서 교통경찰·암행순찰대 등 활용 가능한 경력을 투입, 사고 다발 지역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영상녹화장치(캠코더)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이다.

이 밖에도 ▲변호판 꺾음·가림 등 식별 불가 행위 ▲광음 유발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 등 불법 개조 행위 등도 엄정 단속한다. 최윤희기자

“세뱃돈으로 2만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직원 33명에게 2만 원씩 세뱃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10일 공판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광양농협 조합장 A(6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의 범죄는 조합장 재임 기간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취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하지만 “기부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A 씨의 의식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뱃돈을 받거나 회식을 한 사람들의 1인당 가액 등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